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기준가격
호	소호			
1006		쌀		
1006	10	벼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1006	20	현미		
		1. 메현미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2. 찰현미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1006	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1. 멍쌀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2. 찰쌀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1006	40	쇄미(broken rice)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1102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2	90	기타		
		2. 쌀가루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	
1103	1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	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3. 쌀로 만든 것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1103	20	펠릿(pellet) 2. 쌀로 만든 것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빵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1104	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104	19	기타 곡물로 만든 것 1. 쌀로 만든 것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	90	기타 2.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脂)]	

1901	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미만이고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미만이고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다. 기타 3) 기타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보릿가루의 것은 제외한다. 오트밀의 것 및 보릿가루의 것은 제외한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	---	--	---

1901	20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보릿가루의 것은 제외한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1901	90	기타 3. 기타	오트밀 및 보릿가루의 것은 제외한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